

##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

개호서비스 등의 이용자 부담에는 아래와 같은 경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### 고액 (의료합산) 개호서비스비

- 1개월간의 개호서비스의 자기부담합계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급부됩니다 (오른쪽 표 참조). 또,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고액이 된 경우, 일정 금액이 「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비」 로써 급부됩니다.

2021년 7월 이용분까지

2021년 8월 이용분부터

(현역 동등 수준 소득자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상한액이 일부 바뀝니다.)

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	상한액	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	상한액
· 현역 동등 수준 소득 상당(※)	(세대)44,400 엔	· 연 수입 약 1,160 만엔 이상	(세대)140,100 엔
· 일반 (구시정촌민세 세대 과세자)	(세대)44,400 엔	· 연 수입 약 770 만엔 이상 약 1,160 만엔 미만	(세대)93,000 엔
· 구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 등	(세대)24,600 엔	· 연 수입 약 383 만엔 이상 약 770 만엔 미만	(세대)44,400 엔
①과세연금 등 수입과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	(개인)15,000 엔	· 일반 (구시정촌민세 세대 과세자)	(세대)44,400 엔
②노령복지연금수급자		· 구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 등	(세대)24,600 엔
· 생활보호수급자	(개인)15,000 엔	①과세연금 등 수입과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	(개인)15,000 엔
		②노령복지연금수급자	
		· 생활보호수급자	(개인)15,000 엔

※ 과세소득이 145 만엔 이상인 분 (단, 세대 내의 수입에 따라 신청에 의해 일반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).

### 식비·거주비(체재비)의 자기부담과 경감제도<특정입거자개호서비스비(보충급부)>

-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통소개호 (데이서비스) 나 단기입소 (쇼트스테이) 등 시설 등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소요된 식비, 광열수비 등의 거주비 (체재비), 기타 일상생활비 등이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.
- 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에 있어서 이들 부담액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지만, 소득이 낮은 분의 경우 소득에 따라 식비·거주비 (체재비) 의 부담액이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- 단,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자인 분이나 예저금 등의 금액이 일정액 (단신 세대의 경우는 1,000 만엔, 부부의 경우는 2,000 만엔 (※)) 을 초과하는 분은 식비·거주비 (체재비) 의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2021년 8월부터 경감 대상 요건이 되는 예저금 등의 금액이 일부 바뀝니다.

주: 이용자 부담의 기준은 18 페이지 참조.

###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

- 구시정촌이 「생계유지가 곤란하다」 고 인정한 이용자에게 개호서비스의 10% 부담과 식비, 시설의 거주비 등의 자기부담을 약 4분의 3으로 경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

이용자 부담액의 각 경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
거주지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.